

201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 7개 분야 102개 시책·제도 -

목 차

I. 지방행정 · 민원제도 · 통신 분야(16)

1.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2. 주택 취득세율 조정 시행
3. 친환경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시행
4.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납부
5. 자동차세 세율 배기량별 20원 인하 시행
6.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7.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8.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9. 직속기관 · 사업소 계약사무 도 본청 통합운영
10.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11.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1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의무 발생
13. 공직감찰 민간 암행어사 운영
14. 도정현장 추진단(사회봉사제) 운영
15.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비치
16. 공공 Wi-Fi망 구축

II. 농림 · 해양수산 분야(10)

1. 쌀 등급표시 의무화 등 양곡표시제도 개선
2. 경남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3.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 분담
4.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
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6. 농어촌형 승마시설 도입
7.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
9.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10.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한 新농업교육 추진

Ⅲ. 산업경제 · 문화 · 환경 분야(19)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2.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3.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처벌 강화
4.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5.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6.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7.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9.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시행
10.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11.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12.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13.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14. 저황유 공급 · 사용지역 확대
15.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16. 생태독성관리 3~5종 사업장 확대 · 시행
17.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18. 맞춤형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
19. 광역 순환수렵장 개설 · 운영

IV. 건설교통·토지 분야(12)

1.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2.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4. 허위 광고·표시 금지 대상 공사 확대
5.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6.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7.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입주자 대행 한시적 허용
8.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위탁시행
9.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10.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11.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V. 보건복지·여성 분야(18)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3. 임신부 엽산제 지원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7. 만0~2세아 무상보육 실시
8. 셋째아 이후 모든 아동 보육료 지원
9. 만5세 무상보육 실시(5세 누리과정 도입)
10.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11.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도입
1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1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제 시행
14.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운영
15.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확대
16.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행
17. 건강보험 가입자 노인틀니 사업
18. 국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VI. 교육 분야(12)

1. 나이스 학생서비스 제공
2.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5세 누리과정 도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4.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평가제도 도입
5. 꿈나르미 Book Bus 운영
6.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7. 5세 누리과정 도입
8.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9.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10. 고교 「한국사」 필수선택과목 편성·운영
11. 체계적 진단-처방을 통한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
12. 『토요 안전교육의 날』 운영

VII. 병무 분야(15)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2.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5.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8.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연령 상향조정
9.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업무 병무청 일원화
10.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계급강등 폐지
11.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12.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보상기간 명확화
13. 공익근무요원 반복귀가자의 교육소집 제외
14.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15.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I .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방안 마련
- 보조금의 부당 집행 및 중복 지원 방지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민간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정리하고 사후평가 실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055-211-2351)

주택 취득세율 조정 시행

현 행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50~75% 시행

달라지는 내용

구 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2011년시행	2012년 시행
		2011.3.22 ~ 2011.12.31	2012.1.1 ~ 2012.12.31
9억원이하· 1주택자	4%	1% (75%감면)	2% (50%감면)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2% (50%감면)	4% (감면없음)

- 2011년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되나,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 감면 (2%세율 적용)을 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25)

친환경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시행

추진배경

-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 감면을 통한 친환경 건물의 확산 추진

달라지는 내용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주택의 건물부분 한정)
- 감면비율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 세액공제
- 감면기간 :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6항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2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25)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납부

현 행

- 고지서 발급 시·군의 관내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하였고, 시군별로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됨

달라지는 내용

-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새 납부체계를 시범실시('11.3.2)하고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체계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
- 영업시간 이후에도 납세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간단히 전국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1)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5979)

자동차세 세율 배기량별 20원 인하 시행

추진배경

-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세율 인하

달라지는 내용

- 1,000cc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
- 차종별 자동차세 변경내역

차종	배기량 (cc)	자동차세 변경 내역(단위:원)						증감 (c=a-b)
		기 준			변 경			
		계(a)	자동차세	지 방 교육세	계(b)	자동차세	지 방 교육세	
스파크	995	129,350	99,500	29,850	103,480	79,600	23,880	△25,870
모 닝	998	129,740	99,800	29,940	103,790	79,840	23,950	△25,950
카니발 (9인승)	2,902	829,970	638,440	191,530	754,610	580,400	174,120	△75,360
렉스턴	2,874	821,960	632,280	189,680	747,240	574,800	172,440	△74,720
그랜저	2,656	759,610	584,320	175,290	667,160	513,200	153,960	△92,450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의2
- 시 행 일 :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21)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9)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 개선

추진배경

-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개선으로 납세자 불편 해소

현 행

-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달라지는 내용

-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 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2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추진배경

-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 등 권익보호

현 행

-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적용

달라지는 내용

- 공시가액 6억원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 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25)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 개선

추진배경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시켜 납세자 불편해소

현 행

- 납세자가 상속이나 실종시 취득세 신고를 '상속개시일(실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신고기간 기산일이 상속 및 증여세법과 상이함

달라지는 내용

- 상속(실종)시 취득세 신고기간 기산일을 상속세(증여세)와 일치하여 상속개시일(실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취득시기 변경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411)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2-2100-3925)

직속기관·사업소 계약사무 도 본청 통합운영

추진배경

-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분산된 계약업무를 도 본청에서 통합 처리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전문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정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달라지는 내용

- 통합 대상기관 : 도 직속기관(소방서 포함) 및 사업소(지소 포함)
- 통합대상 계약사무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기준	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8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 업무처리 방식
 - (현행) 기관별로 계약 전 과정 집행
 - (변경) 본청 계약부서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직속기관·사업소 — 대가지급 등 계약에 수반된 사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
- 시행일 : 2012. 1. 10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521)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공개 제도 시행

추진배경

- 하수도 처리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물절약 등 의식제고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공고하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65조 제4항
- 시행일 : 2012. 5. 1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맑은물관리과(055-211-4171)
- 환경부 생활하수과(02-2110-6888)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현 행

- 지금까지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달라지는 내용

- 수도법 개정(2011.7.28)으로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되며 납부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수도법 제46조
- 시 행 일 : 2012. 1. 29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맑은물관리과(055-211-4241)
-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7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의무 발생

추진배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전(2008.1.27)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당초 2012. 1. 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안전관리 의무 부과

주요내용

- 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기간을 3년 연장('12.1.26 → '15.1.26)
- 법 시행전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검사 받지 않은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2.27까지), 안전교육(7.26까지) 의무 발생

관련법규

- 관련법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2조, 제3조
- 시행일 : 2012. 1. 27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재난방재복구과(055-211-4521)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팀(02-2100-3183)

공직감찰 민간 암행어사 운영

도입배경

- 감사부서 인력만으로 공직비리 척결 한계, 민간 자원 양성·활용
-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 및 제보를 통한 공직 비리 발본색원
 - 민·관 감찰 네트워크 구축,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행정 풍토 정착

달라지는 내용

-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감사부서 및 사법기관 근무 경력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위촉·운영
 -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방치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보에만 국한, 감찰 및 감사활동 제한
 - 모든 활동 및 제보 처리 등은 도에서 일괄 처리
 - 명단 비공개 등 비밀유지로 신분노출 방지
- ※ 제보내용 공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즉시 해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281)

도정현장 추진단(사회봉사제) 운영

도입배경

- 공직사회도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조직 경쟁력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임에도,
- 금품수수, 음주운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조직 내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조직의 발전과 결속을 저해 시키고 있어,
- “비리척결 종합대책” 수립 시행(2011.7.30)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도정현장 추진단 운영으로 『청렴경남 도정』 실현

달라지는 내용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부과
 -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써 도정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1조
 - 경상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3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281)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비치

추진배경

-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화 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 신청서가 전무한 실정임.
- 국제화 및 다문화 사회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신청서에 외국어 해석본 비치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 장 소 : 도 민원실 “어디서나 민원처리 접수창구”
- 형 태 : 민원서류 해석본 코팅 후 입식 아크릴판(A4)
- 비치서류 :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6종
 - * 주소지 정보가 필요한 민원, 자동차 정보가 필요한 민원, 제적부의 등·초본교부 신청, 병적정보가 필요한 민원, 대학민원 신청, 위임장 등
- 서비스 할 외국어 : 4종(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시행일

- 시 행 일 : 2012. 2월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대민봉사과(055-211-3361)

공공 Wi-Fi망 구축

추진배경

- 모바일 기기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누구나 사용 가능한 개방형 무선인터넷(Wi-Fi)망 구축으로 도민이 편리한 정보복지 제공

주요내용

- 18개 시·군 56개 지역의 공원(호수), 도서관, 박물관, 재래시장 등 공공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구축
- 도민들이 스마트폰, 넷북, 테블릿PC 등을 3G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추가요금 부담 없이 이용 가능

시행일

- 시 행 일 : 2012. 하반기(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정보통계담당관실(055-211-2551)

Ⅱ. 농림 · 해양수산 분야

쌀 등급표시 의무화 등 양곡표시제도 개선

추진배경

양곡의 품질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달라지는 내용

- 단백질 함량 표시(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구 분	현 행	개 정	비고
쌀 품질 표시	단백질 함량	단백질 함량	
	(6.0)%이하	수	
	(6.1) ~ (6.5) %	우	
	(6.6)% 이상	미	
		단백질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 2011. 11월부터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 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
- 시행일 : 2012. 1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71)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02-500-1981)

경남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 현 행

- 적용대상품목 : 23개
 - 전국시행 적용품목 : 12개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뽕은감,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 시범사업(주산지 지역제한) 품목 : 11개 품목
 - 수박(의령·함안), 시설딸기(진주·밀양), 시설토마토(김해), 대추(밀양), 시설풋고추(밀양), 시설호박(진주·의령), 시설국화(창원), 시설장미(김해), 벼(김해·밀양), 밤(산청), 매실(하동)

□ 달라지는 내용

- 적용대상품목 확대 : 23 → 28개
 - 전국시행품목 확대 : 18개 품목(6개 추가)
 - 추가 : 벼, 밤, 매실, *고구마, *옥수수, *마늘
 - 시범사업(주산지 지역제한) 품목 : 10개 품목(1개 감소)
 - 기존 : 수박(의령·함안), 시설딸기(진주·밀양), 시설토마토(김해), 대추(밀양), 시설풋고추(밀양), 시설호박(진주·의령), 시설국화(창원), 시설장미(김해)
 - 신규(예정) : *파프리카(지역미정), *녹차(지역미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재해보험사업)
- 시행일 : 2012. 1. 1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81)
-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02-500-1604)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 분담

추진배경

- 축산농가 책임분담원칙 확립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현행

- 구제역 백신 농림수산식품부 일괄 구매 후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

달라지는 내용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
※ 전업농가 :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사육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무상공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예방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981)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02-500-1528)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강화 등

추진배경

-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주요내용

-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강화
 -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신고대상 영업(동물생산·수입·판매업)의 축종범위 확대
 - (현행) 개
 - (변경) 개, 고양이, 토끼 등

관련법규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 시행일 : 2012. 2. 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981)
- 농림수산물식품부 방역총괄과(02-500-208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도입배경

- 국내·외적인 동물복지 수준 강화 추세 및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주요내용

- 동물복지 실천 농장에 대한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 축산농장 신청 → 농림수산물검역검사 본부 심사(축종별 관리방법, 사육시설 및 환경기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마크 부여
-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13년), 육계(14년) 등으로 확대 예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농림수산물검역검사 본부 고시 제정예정)
- 시행일 : 2012. 2. 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981)
- 농림수산물식품부 방역총괄과(02-500-2080)

농어촌형 승마시설 도입

현 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설치

달라지는 내용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도입
 -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개념 : 말의 위탁관리, 승용 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
 - 시설기준 : 마사, 관리자, 마장과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m² 이상
 - 안전기준 : 승마용 신발 및 헬멧 착용,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 시행일 : 2011. 9. 10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751)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4)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

도입배경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1996의정서(2009.2.21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시행

주요내용

- 가축분뇨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 자체 차단
 -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8개 품목만 배출허용
 - ※ 8개 허용품목 : 하수오니, 준설물,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물, 불활성무기지질물질, 플랫폼·해상구조물, 강철·콘크리트재질의 대형물질, CO₂스트림
 - 사전예방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3771)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02-504-5437)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02-500-205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업 재생산 활동 뒷받침

주요내용

- 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을 5종 → 10종으로 확대
(현행) 양식수산물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변경) 양식수산물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농어업재해보험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어업진흥과(055-211-3861)
-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02-500-1604)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추진배경

- 선박운항 시 음주 관련 해양사고 예방 및 강화된 국제기준에 적합한 음주기준 마련

현 행

- 선박운항 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로 설정
- 위반형태
 - 선박의 운항을 위해 조타기 조작한 자, 그 조작을 지시한 자,
 - 도선을 한 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처벌기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달라지는 내용

- 국제해사기구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운항 시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에서 0.05%로 상향 조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105조
- 시 행 일 : 2011. 12. 16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어업진흥과(055-211-3851)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02-2110-8580)

미래농업인 양성을 위한 新농업교육 추진

도입배경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영농현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와 친환경 농자재,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EM 제조기술 등 친환경 유기농업교육 기회 확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농기계 교육으로 향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내용

- 도 단위 전문교육과정 : 2개 과정
 - 친환경농업과정 : 4기 120명(기당 30명)
 - 교육장소 : 농업기술교육센터
 - 교육대상 : 도내 친환경재배농가 및 교육희망 농업인
 - 교육운영 : 1주(합숙과정)/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등
 - 귀농·귀촌 정착과정 : 4기 120명(기당 30명)
 - 교육장소 : 농업기술교육센터
 - 교육대상 : 도내 귀농·귀촌농가 및 교육희망 농업인
 - 교육운영 : 2주(합숙과정)/ 시·군 교육생 추천 등

시행일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교육센터(055-771-6151)

Ⅲ. 산업경제 · 문화 · 환경 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도입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의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K-water,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울촌 등 13개 발전회사

- 공급의무자 연도별 의무비율

- 공급의무자의 기준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태양광 별도 할당량

- 태양광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초기 5년간('12~'16) 별도 할당물량(1,200MW) 배정, 태양광 산업육성 및 보급 촉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055-211-2731)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02-2110-5425)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도입배경

-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국제적인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도입

주요내용

- 자율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위해수준이 낮은 일부 전기용품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전환
 - ※ 대상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20종+정보·사무기기 11종+기타2종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출고(통관)전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실시
- 사진을 포함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제품설명서·시험결과서 등을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 부터 5년간 비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055-211-2891)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2-509-7244)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

□ 주요내용

- 가짜석유 취급주유소 공표방법 강화
 - (현행)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시 인터넷 게시
 - (변경)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사업장 내에 행정처분 내용 등을 직접 명시한 게시문 부착·공포
- 가짜석유 취급 적발 시 행정처분 강화
 - (현행) 가짜석유 적발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변경)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 제한, 반드시 사업정지로 처벌기준 강화
-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 행정처분(신설)

□ 관련법규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일 : 2012. 5. 15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055-211-2891)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02-2110-4889)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도입배경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휴대폰 판매가격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 발생

주요내용

- 대상품목 : 휴대폰, 테블릿 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 표시대상점포 :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 대상 적용
- 표시내용 : 단말기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 모두 표시
- 부당한 행위 금지
 -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
 -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
 -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민생경제과(055-211-3121)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02-2110-4811)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도입배경

- 전자상품권 도입으로 온/오프라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 도모

□ 주요내용

-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오프라인 가맹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 가능
- 종 류 : 5만원권 및 10만원권(기프트 카드 형태)



- 구입처 : 기업은행 각 지점(시범운영 후 확대)
- 사용처 : 옥션/G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 BC카드가맹점포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민생경제과(055-211-3131)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61)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에 보정제도 도입

도입배경

- 등록신청의 사소한 흠결에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 및 처리기간 지연 문제 해소

주요내용

-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 시에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1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고 신청인이 흠결을 치유하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록보정제도 시행
 - 등록신청의 흠결을 1개월 내에 보정하면 등록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시기로 등록
 - 흠결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와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안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특허법
- 시행일 : 2012. 7.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민생경제과(055-211-3121)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042-481-8238)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 추진배경

-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 달라지는 내용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개편하고, 허위·부실평가에 대한 벌칙 강화
-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
- 개발사업 환경영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일 : 2012. 7. 22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4121)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2-2110-761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도내 많은 시·군이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또는 정액제로 수거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경제적 유인책 필요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 추진계획

- 전 시·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 '10년 7개시·군 → '11년 9개시·군 → '12년 18개시·군

기 실시 시·군	2012년 실시 시·군	비 고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 시 행 일 : 2012. 12. 31까지(도내 전 시·군 전면 실시)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4161)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2-2110-6936)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시행

도입배경

-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되거나 종량제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으로
 - 이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분리수거 등 수거·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행
- ※ 소형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추진계획

- 전 시·군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시행
 -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
 - 기존 타 분리수거함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빨간색으로 제작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시행일 : 2012. 11. 10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4161)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3)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으로 정부지원 시책 참여촉진

현 행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 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제한

달라지는 내용

-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 가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 시 행 일 : 2012. 1. 26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055-211-2921)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042-481-4541)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추진배경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통한 석면안전관리의 체계화

주요내용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
-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 시행일 : 2012. 4. 29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4131)
-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7687)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체계 마련

추진배경

- 생활권 수목피해에 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마련

주요내용

- 산림병해충을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
- 수목진료 전문업체에서 수목피해에 관한 진료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수목진료시책 수립·시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림보호법
- 시행일 : 2012. 1. 1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연구과(055-771-6531)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042-481-4038)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

추진배경

-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호 강화

주요내용

-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055-211-1571)
- 환경부 생활환경과(02-2110-6815 · 6909)

저황유 공급 · 사용지역 확대

현 행

- 황 함유량 0.3%이하 공급 · 사용지역 : 창원 · 김해 · 양산 · 진주시
- 황 함유량 0.5%이하 공급 · 사용지역 : 통영 · 사천 · 거제시, 함안군

달라지는 내용

- 황 함유량 0.5%이하 공급 · 사용지역을 10개 지역 추가 확대
- 밀양시, 의령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055-211-1521)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02-2110-6776)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현 행

-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
 - 지방 제조업체의 인력소모 및 시간과 검사기간 과다소요
 - 검사비용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요인 작용
 - 제품검사의 효율성 저하
 - 검사 업무량 증가 및 품질관리 요인 부족

달라지는 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로 제조업체가 검사기관을 선택하여 실시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제품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36조
- 시 행 일 : 2012. 2. 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방호구조과(055-211-5371)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02-2100-5385)

생태독성관리 3~5종 사업장 확대 · 시행

□ 추진배경

- 산업폐수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화학기준을 만족하는 방류수에서도 생태독성 발생으로 수생태 손상의 우려가 있어 생물검정(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07.12)

□ 달라지는 내용

- 규모별·지역별 적용시기

구분	도내 대상시설 수	지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26 (하수 : 10, 폐수 : 16)	-	TU1	2011. 1. 1부터
1, 2종 사업장	4	청정 가, 나, 특례	TU1 TU2	
3, 4, 5종 사업장	52	청정 가, 나, 특례	TU2	2012. 1. 1부터
			TU1	2016. 1. 1부터
			TU2	2012. 1. 1부터

※ 대상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중·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의 폐수 배출시설

- 부과금 및 행정처분
 -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대상이 아님
 -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시 위반 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행정처분을 적용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www.biowet.or.kr) 참조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규칙 제38조(별표13)
- 시행일 : 2012. 1. 1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맑은물관리과(055-211-4221)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02-2110-6846)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도입배경

-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및 시행

주요내용

-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함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500㎡이상
- ※ 물류창고업 :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 부착 등을 하는 사업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현재 하위 법령은 미개정)
- 시행일 : 2012. 2. 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055-211-2791)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9)

맞춤형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

추진배경

- SSM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마켓 대상 전문컨설턴트의 진단과 처방으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슈퍼마켓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60개업체
 - 업력 6개월이상 매장면적 300m²이하 슈퍼마켓
 - SSM 입점 또는 입점예정지 반경 500m이내 슈퍼마켓 우선
- 지원내용 : 점포별 전문 컨설턴트 현장방문 지도(점포별 5회)
- 추진절차 : 시·군 신청·접수→도 최종선정→컨설턴트 배정
- 점포선정 : 신청점포수에 비례하여 시군별로 안배하되, SSM인근 점포 우선
- 연계지원
 - 중소 슈퍼마켓 특별자금 지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시설개선,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 지원조건 : 1억원 이내, 4%내외 저리,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우선 선정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시행일 : 2012. 3월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민생경제과(055-211-3141)

광역 순환수렵장 개설 · 운영

추진배경

- 시·군 개별 수렵장 운영시 야생동물의 인접지역 이동 등 효율적 구제 애로

주요내용

- 4~5개 시·군을 도내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순환·운영
- 광역 수렵장 전환을 통한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개체수 조절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 시행일 : 2012. 하반기(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4141)

IV. 건설교통 · 토지 분야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 추진배경

- 1910년 일제의 식민통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새 지적제도 필요
- 지적불부합(14.8%)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의 문제점 등 해결을 위해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와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등 지적선진화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 ~ 2030년(약 20년간)
- 원칙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나 면적증감이나 경계변경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방식 다변화
 -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주요대상으로 추진
 -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지역은 매년 실시되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점진적 디지털화 추진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 2012. 3. 17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3551)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031-436-8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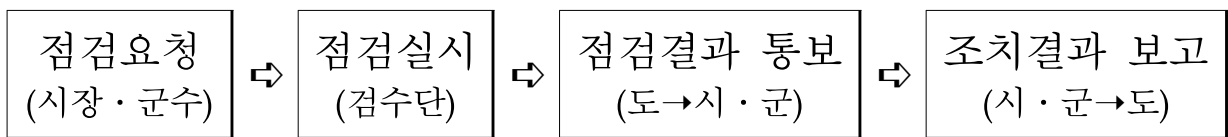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 도입배경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도로 건전한 주택건설문화 정착

□ 주요내용

- 점검대상 : 다음 각 호 중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점검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붙박이가구, 싱크, 욕실자재
 - 단지 내 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조경
 - 지하주차장 설비, 옥상 난간, 배수구 등
- 점검방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일 : 2012. 3월부터(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055-211-4431)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현 행

- 배기량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

달라지는 내용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2012. 1. 1 ~ 6. 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2012. 1. 1부터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99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교통지원과(055-211-4461)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02-2110-8703)

허위 광고·표시 금지 대상 공사 확대

도입배경

- 해당 건설업의 등록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허위 광고 및 표시는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하여 발주자 피해 및 수주질서 문란 우려
-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민을 안전을 저해할 우려

주요내용

- 업종별 영업범위 일부 완화에 따라 허위 광고 및 표시 금지 대상공사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
 - 현행 : 가스, 철강재, 강구조물, 식도, 승강기, 철도·궤도, 난방 등 7개공사
 - 개정 : 모든 건설공사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일 : 2012. 5. 2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321)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02-2110-8536)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편

도입배경

-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국토이용체계 전면 개편 필요

※ 제8차 국경위 '국토이용의 효율적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주요내용

- 제1종과 제2종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 대상지역을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등인 경우에도 포함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2. 4. 1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321)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02-2110-8191)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도입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용 보조금 선정대상자들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를 On-Line 확인으로 대체

주요내용

- 생활비용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2010년 3,670,142원)
- 생활비용 선정기준
 - 현행 :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확인을 위해 22종의 서류 제출
 - 변경 : 개발제한구역전산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을 연계한 시스템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지급금액 : 세대당 60만원/연(가스료,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일 : 2012. 7. 3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321)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02-2110-6197)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입주자 대행 한시적 허용

추진배경

-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일괄 시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 사업시행자의 상황에 따른 입주가능시기의 변동이 심해 입주 예정자가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이 어려웠음.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입주자 일부 대행사업 절차 마련

주요내용

- 개발사업 일부 대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는 대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대행개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결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제5항
- 시행기간 : 2011. 12. 5 ~ 2012. 12. 31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65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8161)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위탁시행

추진배경

- 지금까지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설치기준 등 어려움을 겪어왔음.
-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항만, 도로, 상수도, 철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시행 결정
- 위탁시행하기로 결정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공공기관과 협의
- 위탁사업내용, 위탁율 등을 결정하여 협약 체결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시 행 일 : 2011. 12. 5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65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8161)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 없이 토지수용권한이 부여

주요내용

-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위한 일정요건 부여
- 이 법 시행 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 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처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65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8161)

준공된 특수지역내 개발행위 일부 허용

추진배경

- 지금까지 특수지역 내에서는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 등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행위를 제한
- 특수지역내 입주한 업체들의 개발행위가 어려웠음.

주요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 시행일 : 2011. 8. 4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65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8161)

민간사업시행자 건축사업 시행 한시적 허용

추진배경

-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주요내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사업시행자도 한시적으로(2011.8.4 ~ 2012.12.31)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 시행기간 : 2011. 8. 4 ~ 2012. 12. 31

관련부서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651)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816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추진배경

-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주요내용

-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부지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소관청(시·군·구)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시행일 : 2012. 4월 예정(시행일부터 3년간)

관련부서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3561)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031-436-8968)

V. 보건복지 · 여성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 의의

- 정부(중앙·지방)의 주요정책 및 법령과 예산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제도의 전면적 시행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지자체의 경우 법제담당부서)의 법령안 심사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 또한, 정부정책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성차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구 분	현 행	변 경	추진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성평등 관련 사업	성평등 관련 사업 + 계획 + 제·개정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2.3.16 시행)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	중앙정부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13년 예산부터 시행)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시 행 일 : 2012. 3. 16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055-211-6811)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075-4653)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현 행

-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 지원금액 : 20만원(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

달라지는 내용

-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1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 지원금액 : 50만원(도비 15만원, 시군비 35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1)

임신부 엽산제 지원

도입배경

- 임신초기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아 등 출산예방 및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도모 필요

주요내용

- 지원대상 : 35세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1)
-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02-2023-753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도입배경

- 청소년 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1)
-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02-2023-753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 달라지는 내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시간제 돌봄 나형) 가구의 본인부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경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 가구의 본인부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경감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완화 (시간당 4천원→3천원)

<2011년>				<2012년>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4,000원	1,000원
나형(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 나형(50~70%이하)	2,000원	3,000원
				다형(70~100%)	1,000원	4,000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완화 (월 40만원→30만원)

<2011년>				<2012년>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형(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나형(40~50%이하)	60만원	40만원
다형(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다형(50~60%이하)	50만원	50만원
				라형(60~70%이하)	40만원	60만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1)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달라지는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 지원 및 복지급여 추가지원

구분	종전('11년)	달라지는 내용('12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연령초과 자녀(만18세 이상, 취학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자녀의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복지급여	아동양육비(월5만원) - 만12세 미만 자녀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전액) - 고등학생 자녀 < 신 설 >	아동양육비(월5만원) - 만12세 미만 자녀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전액) - 고등학생 자녀('12년부터 교과부이관) 학용품비(연5만원) - 중고등학생 자녀 추가양육비(월5만원)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생활보조금(월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 신 설 >	
	< 신 설 >	
조손가족희망사다리사업	< 신 설 >	- 손자녀 학습도우미 파견, 가사돌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 수혜대상
 - 지원대상 및 복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조손가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시행일 : 2012. 1. 1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3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075-8713)

만0~2세아 무상보육 실시

추진배경

-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현 행

-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월 39만 4천원 ~ 28만 6천원 지원

달라지는 내용

- 전 계층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 보육료를 월 39만 4천원 ~ 28만 6천원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41)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7)

셋째아 이후 모든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배경

-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셋째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현행) 셋째아 이후 만 3~5세
 - (변경) 셋째아 이후 만 0~5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41)

만5세 무상보육 실시(5세 누리과정 도입)

추진배경

-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현 행

-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 대하여 만5세아 유아보육비를 아동 1인당 월 17.7만원 지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달라지는 내용

- 전 계층에 대하여 만5세아 유아보육비를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된 만5세 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41)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2-2023-892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도입배경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수당 지원 신설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아동
- 지원단가
 - 36개월 미만 아동 : 월20만원
 - 36개월~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 월10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41)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2)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 도입

현 행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제도
 - 모니터링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1차검토 → 심의결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 관보 고시
- 심의위원회 : 청소년 보호위원회(여성가족부)

달라지는 내용

- 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제도 도입
 - 결정결과 통지 30일 이내 청구가능
 - 청구대상자 : 당해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 시행일 이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2012.2.27일까지 청구 가능
-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제도(변경)
 - 모니터링 →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1차검토 → 심의결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 재심의신청 → 결과통보 →
관보 고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11조의2
- 시행일 : 2012. 1. 29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055-211-6851)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02-2075-8689)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도입배경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600여 개소(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부랑인, 정신보건시설 등)
- 주요내용
 -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의무적 사용
 - 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확인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적법한 보조금 집행, 부정방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근거 :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2010.11.30)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055-211-491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2-2023-8296)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제 시행

도입배경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제 시행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어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사업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재와 같이 지정제로 운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2. 8. 5부터(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055-211-491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2-2023-8145)

거동불편자 세상보기 전용버스 운영

도입배경

- 장기간 질병과 장애 등으로 생애 한 번도 바깥나들이를 하지 못한 저소득 거동불편자 심신 활력제고 및 사회의 따뜻한 정 공유로 복지 경남 실현

주요내용

- 저소득 거동불편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장애인 등의 거동불편자 대상
- 거동 불편자와 자원봉사자 1:1 동승여행을 초기 월 2회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일

- 시 행 일 : 2012. 상반기(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055-211-4915)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확대

도입배경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에게 의치 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 향상

주요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사실생계곤란자 등 저소득층 어르신
- 지원내용

구 분	2011년	2012년	비 고
사업량	2,035명	4,000명	
사업비	4,070백만원	9,810백만원	
비 용	750천원 지원, 220천원 본인부담	전액무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구강보건법 제3조, 제7조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12. 3월(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1)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행

추진배경

- 마산·진주의료원의 시범실시 결과 좋은 호응을 얻음
- 간병서비스 제공의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수혜자 확대

달라지는 내용

- 마산·진주의료원 → 전 시·군(함안·산청군 제외)으로 확대
- 사업량 확대
 - 2개 의료기관(9병실 50병상) → 18개 의료기관(67병실 394병상)
- 지원대상 및 간병료
 - 의료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 및 65세 이상자) 우선 대상자 지정

지 원 대 상		간 병 료
2011년도	2012년도	
▪ 행려환자, 노숙자	▪ 행려환자, 노숙자	무 료
▪ 건강보험료 월43,600원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환자, 차상위 계층 등) ▪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65세 이상자 중 차상위 계층	10,000원 (1일)
▪ 일반건강보험환자	▪ 65세 이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 그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000원 (1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 조례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81)

건강보험 가입자 노인틀니 사업

도입배경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에게 의치 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 향상

주요내용

- 대 상 자 :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단가 : 편악 기준 전부틀니 950천원(보험료 50%, 본인부담 50%)
※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실시 예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시 행 일 : 2012. 7월부터(예정)

관련부서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71)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02-2023-7392 · 7418)

국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기간 장기화(평균 26.3개월)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 주요내용

- 독립적 조정기구 설치
 -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
 - 판단·조정기능(의료분쟁조정위원회)과 감정기능(의료사고감정단)을 분리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분만사고
- 형사처벌 특례 인정
 -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과실 치상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도입
 - 손해배상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 청구 가능

□ 조정절차

- ① 의료사고 발생 및 상담 → ② 조정중재 신청·접수 → ③ 조정중재 절차개시 및 조정부·감정부 사건배당 → ④ 감정 및 조정결정 → ⑤ 조정결과 통지 → ⑥ 손해배상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2. 4. 8부터(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2013. 4. 8부터)

□ 관련부서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4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2-734-1851)

VI. 교육 분야

나이스 학생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권 보장 및 자발적인 교육환경 조성
- ※ 4개 시·도교육청의 8개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실시(2011. 5. 31 ~ 2012. 2. 28)

주요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54개 항목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나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자기신체평가 결과조회, 신체활동 처방조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체력을 스스로 관리
- 학생서비스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강좌 조회, 온라인 수강 신청, 출결상황 조회 가능
- 학생서비스 이용 학생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받아 관리

관련근거 및 시행일

- 관련근거
 - 나이스 운영 기본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2133, 2011.5.2)
 - 나이스 학생서비스 시범운영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3329, 2011.6.24)
- 시행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과(055-268-1253)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화과(02-2100-8608)

저소득층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5세 누리과정 도입)

현 행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 대하여 만5세 유아학비 지원(공립 월59천원, 사립 월172천원)

달라지는 내용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5세아에 대하여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공립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사립 월200천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055-268-1404)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02-2100-6556)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현 행

- 무상 학교급식 지원 대상
 -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
 - 10개 군의 읍면 초·중·고
 - 8개 시의 읍면 초·중
- 무상 학교급식 지원 일수 : 180일

달라지는 내용

- 무상 학교급식 지원 대상
 -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에 130%로 확대
 - 8개 시의 읍면 초·중에서 고등학교 추가
 -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신규 지원
- 무상 학교급식 지원 일수를 190일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지원조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055-268-1305)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02-2100-6546)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평가제도 도입

도입배경

- 일반고, 특성화고 등 구분 없이 실시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 수용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고졸 취업 분위기 정착을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역량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
-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 기초능력군(의사소통 및 수리활용영역) 평가
 - 업무처리능력군(문제해결영역) 평가
- 시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평가결과는 인증서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임

관련근거 및 시행일

- 관련근거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4425, 2011.10.27.)
- 시행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055-268-1221)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02-2100-6395)

꿈나르미 Book Bus 운영

추진배경

- 문화소의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과거 이동도서관의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한 적극적 독서문화 활동 전개 필요

주요내용

-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활동 서비스 실시
- 문화소의 지역과 계층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 후 맞춤형 활동 실시
- 45인승 관광버스를 개조해 Bus 2대로 운영(김해·창원도서관)
- ※ 김해도서관 시범운영 실시 후 향후 확대 운영여부 결정

시행일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055-268-1237)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현 행

- 유치원과정(만4세 이상) ~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 실시
-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 90천원, 사립 361천원

달라지는 내용

- 유치원과정(만3세 이상) ~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시
-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 90천원, 사립 361천원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만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43)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02-2100-6569)

5세 누리과정 도입

도입배경

-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현 행

- 만5세 무상교육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제한하여 월 17.7만원 지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달라지는 내용

- 만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 월 20만원 지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 한 '5세 누리과정' 적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13)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02-2100-6556)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현 행

- 수업일수
 - 월 2회 토요일수업일 운영 : 매학년 205일 내외 운영 권장
-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 : 학교별 자율 운영
-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 : 미 운영 또는 자율 운영

달라지는 내용

- 수업일수
 -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 :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토요일 돌봄교실 확대 운영
-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 : 주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토요일 확대 운영 권장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 시행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13)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02-2100-6204)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추진배경

- 특수학교 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1개교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창원천광학교
- 장애학생 현장실습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 장애학생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실시
- 유기농식품 생산 및 포장 관련 업종 취업기회 확대
- 사회적기업(장애인일자리창출형) 유치로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한 현장실습의 기회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
- 시행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42)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02-2100-6563)

고교 「한국사」 필수선택과목 편성·운영

추진배경

- 쉽고 재미있는 역사 교과서 개발로 학생 중심의 역사교육 실현 및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정 정립

주요내용

- 일반 선택과목에서 필수 선택과목으로 운영
- 단순 암기 중심 주입식에서 쉽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역사교육
- 학습량 과다(9개 영역) → 필수학습요소 중심 학습량 적정화(6개 영역)
- 시대적 요구 반영이 미흡하므로 세계사와 연관성 강화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영역 반영에서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 중심으로 영역 구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근거 : 역사 교육과정 개정(교과부 고시 제2010-24호, 2010.5.12)
- 시행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23)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02-2100-8726)

체계적 진단-치방을 통한 학습부적응학생 통합지원

현 행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교 자체 학습검사
- 학습부진아 진단 및 학교 차원의 구제방안 모색
- 학습부진아 지도카드에 의한 부진아 관리
-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의 지원 강화

달라지는 내용

- 학습부진학생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주의·위기군 학생)
- 학습부진아 대상 스마트캠프(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기초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진학생 체계적 관리
- 기초학력 미달학교 학습인턴교사 의무배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 시 행 일 : 2012. 3. 1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055-268-1136)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02-2100-6357)

『토요 안전교육의 날』 운영

도입배경

- 2012년부터 초·중등학교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여가 시간을 활용한 방과후 수업으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주요내용

-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대피체험(완강기, 구조대, 열, 연기 등)
 - 화재안전체험(전기, 가스 등 부적절한 시뮬레이션)
- 경남소방교육훈련장 활용 전문안전교육
 - 유치부, 초·중등학생, 일반인 대상 차별화된 소방안전교육
 -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 가족안전체험장' 운영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예방 교육·홍보)
- 시행일 : 2012. 1월부터

관련부서

- 경상남도 방호구조과(055-211-5371)

VII. 병무 분야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추진배경

-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 행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달라지는 내용

-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 취득 또는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신과 질환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그 밖에 진단 위조 등 병역면탈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된 사람은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취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제77조
- 시 행 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병역조사팀(☎042-481-2788)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추진배경

- 내과, 정신과 질환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확보 및 고의적 치료 방치 등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 예방

현 행

-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달라지는 내용

-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로 판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 내과·정신과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충분한 병력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7급 경과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012.1.1.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제12조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징병검사과(042-481-2945)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추진배경

- 제도적 악용을 통한 병역면탈 방지와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대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
 - ※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현 행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은 제2국민역에 포함

달라지는 내용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 시 행 일 : 2012. 1. 1부터(1993.1.1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

관련부서

- 병무청 징병검사과(042-481-2916)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추진배경

- 병역면탈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수형사유로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여 병역면탈 범죄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 자진 이행 분위기 확산

현 행

- 죄명 구분 없이 수형자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달라지는 내용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37조
- 시 행 일 : 2012.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징병검사과(042-481-2916)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추진배경

-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 입영을 연기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현 행

- 징병검사 이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기존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달라지는 내용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새롭게 처분된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제14조의2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징병검사과(042-481-2945)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추진배경

- 고졸 이하자에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 제고

현 행

- 대학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위주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운영

달라지는 내용

- 고졸이하자와 각급 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확대
- 따라서, 학력 간 차별해소와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현역입영대상자 모두가 스스로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 시 행 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6)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추진배경

- 다양한 현역병 모집분야를 신설, 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 확대

주요내용

- 육군 '연고지 복무병', 육군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을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조기적응 및 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 확대
 - 육군 '연고지 복무병'은 강릉시 등 21개 시·군에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선발
 - 육군 '특공·수색병'은 특공여단, 특수부대 등 특수임무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서류전형과 체력평가를 거쳐 선발
 - 해군 '동반입대병'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입영하여 전역 시까지 함께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동반 지원자 2인의 중·고교성적 또는 대입 수능성적, 출결사항, 면접점수 등을 종합 반영하여 선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육군·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모집과(042-481-2746)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연령 상향조정

추진배경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 연령을 사법연수원생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달라지는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 연령을 당초 29세에서 사법연수원생과 같이 30세로 상향 조정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 시행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7)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업무 병무청 일원화

추진배경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국방부 담당) 및 관리(병무청 담당) 업무 이원화로 국민혼란 및 민원 발생에 따라 일원화 필요

달라지는 내용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권자를 병무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를 병무청장으로 일원화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 시행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37)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계급강등 폐지

추진배경

- 장교, 준·부사관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계급을 유지하는 반면, 현역·예비역의 병이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에는 이등병으로 강등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현 행

- 현역 및 예비역의 병이 수형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할 경우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

달라지는 내용

-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이 수형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도 편입 당시 계급을 유지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수형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계급이 강등된 사람도 원 계급으로 회복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 시 행 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70)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추진배경

-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 퇴영(귀가) 후, 교육소집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함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현 행

-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 퇴영 후 재교육 소집 실시

달라지는 내용

- 보충역 교육소집 중 훈련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공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에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되어 남은 교육소집을 마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빨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 시 행 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사회복지정책과(042-481-3007)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보상기간 명확화

현 행

-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 보상기간 미규정

달라지는 내용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복무기관의 장이 보상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 시 행 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042-481-3011)

공익근무요원 반복귀가자의 교육소집 제외

달라지는 내용

-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시 입영신체검사결과 같은 병명으로 최초 소집일로부터 2년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은 교육소집 제외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 시행일 : 2012. 1. 1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사회복지정책과(042-481-3007)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추진배경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제한으로 민원불편 및 지원인력의 효율적 활용 곤란

달라지는 내용

-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범위를 현행 '편입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로 개선
- 또한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이동근무가 가능한 경우를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 4
- 시행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추진배경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의 범주에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를 포함하여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 지원

현 행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

달라지는 내용

-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비록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시 행 일 : 2011. 11. 25부터

관련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과(042-481-2757)